

총량기준(제2조제1항 관련)

1. 영업장 수에 관한 총량기준

영업장 수에 관한 총량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 및 조정한다.

- 가. 사행산업 업종별 이용자 또는 구매자 및 영업장의 수(장외 발매소와 장외 매장을 포함한다) 등의 시장 상황
- 나. 사행산업 업종 간 영업형태 또는 개별 업종 내 상품 간의 유사성과 중복성

2.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기준

가.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: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카지노업을 제외한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카지노업

나. 해당 연도 사행산업 전체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설정: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해당 연도 예상 국내총생산(GDP) 규모 대비 해당 연도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액(총매출액에서 이 영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목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한다.

다. 해당 연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설정: 다음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·조정한다.

- 1) 나목에 따라 설정된 해당 연도 사행산업 전체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을 전년도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해당 연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(이하 "업종별 매출총량"이라 한다)을 설정한다. 이 경우 전년도의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이 전년도의 업종별 매출총량을 초과한 업종이 있는 경우 전단에 따른 순매출액은 해당 업종의 전년도 업종별 매출총량에서 초과한 금액 전부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.
- 2)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 결과 최상위 및 최하위 등급을 받은 업종의 업종별 매출총량에서 각각 7%를 더하거나 빼고, 차상위 및 차하위 등급을 받은 업종의 업종별 매출총량에서 각각 4%를 더하거나 뺀다.
- 3) 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 중 특정 평가 항목에 대한 결과가 우수한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 매출총량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연도 업종별 매출총량 산정 시 전단에 따라 추가로 부여된 매출총량을 반영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정한다.
- 4) 그 밖에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, 경영 상황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발생, 천재지변,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업종별 매출총량을 조정한다.